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6. 3. 16. 상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」 제32조(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)가 폐지되어 법적근거를 상실하여, 본 규칙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48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용자규칙 규칙 폐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용자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